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6. 23.(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
조례안
(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추 병 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36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관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 및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한 대중교통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구민의 권리와 의무(안 제4조)
- 라.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(안 제5조)
- 마. 대중교통 안전 및 육성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- 바.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3) 구민의 권리와 의무(안 제4조)

4)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(안 제5조)

5) 대중교통 안전 및 육성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
-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,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친환경 교통수단, 대중교통 환경 개선등을 통한 지원 사항 마련

6)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(안 제8조)

-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
다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대중교통 체계 지원 사항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요구된다 보며 교통비 지원 등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(협의 및 조정)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봄

관계법령

□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72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1.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·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
 2.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
 3.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
 4.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
 5.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
 6. 오지·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
 7.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 8.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,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